



■ 국방정책연구소

제8차 방산특조법 개정에 붙여



閔晟基

국방부 획득개발국 차장, 공학·경제학 박사



▲국산무기 및 장비들을 전시한 전쟁기념관 「방산장비실」

우리 나라 방위산업은 지난 20년간 총 획득비용의 약 3분의 2정도를 국산장비로 조변하였고, 현재 80여개 방산업체에서 약 3백여 품목의 방산물자를 생산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기본법이 바로 '73년초에 제정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당시 이미 적용중인 군수물자 조달관리를 규약한 군수품관리법과 달리 방산물자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방위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후 본 법령은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위산업육성기금 설치, 각종 계약 및 원가계산제도 발전, 방위산업진흥회 설립, 품질보증제도 발전, 방위산업 기본계획

수립, 방산업체 전문·계열화 제도 설정, 군사절충교역제도 발전 등 7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들어 국방과학기술 개발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도모하고 인·허가, 계약 등 각종 제도의 실무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제8차 개정을 하게 되었고, 이어 올해 7월에 그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20년간의 본 법령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금번 주요 개정내용과 본 개정을 통한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변 천 과 정

본 법령을 제정하게된 당시 배경은 '69년 주한미군 감축선언과 '70년대초 북한의 전쟁준비 완료선언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고조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안보상황에 놓이게 되자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위산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당시 국내산업구조는 식품, 섬유 등 경공업 위주로 되어 있었고, 고도산업사회로의 발전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선도할 산업으로써 방위산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시책에 부응, 자주국방의 요체인 軍 전력증강 사업을 우리 힘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73. 2. 17일 제정하여 이를 법률 제2540호로 공포하게 된 것이다.

그후 83년들어 일반 군수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의 “군수” 용어를 “방산”으로 변경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83. 12. 31일 제4차 개정한 후 오

늘날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먼저,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3차에 걸쳐 개정하였는데, 제1차 개정주요내용은 '77. 7. 23일 전시대비 원자재 비축을 위한 방위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군수물자 원가계산 및 착수금, 중도금 지급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군수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으며, 군수물자 조달 및 연구개발 계약체결시 장기계약 또는 개산계약체결을 위한 특례의 신설, 그리고 품질관리·지도를 위해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두도록 하였다.

'79년에 들어와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진흥을 위해 방위산업진흥회를 설립, 각종 보증업무와 수출입 등의 정부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업체의 방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군수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시 일반업체까지도 위촉할 수 있도록 '79. 4. 17일 제2차 개정을 하였다.

그후 제3차 개정은 '81년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인·허가 정비를 위한 관련법률

일괄개정에 따라 군수물자 수출을 국방부장관 허가사항으로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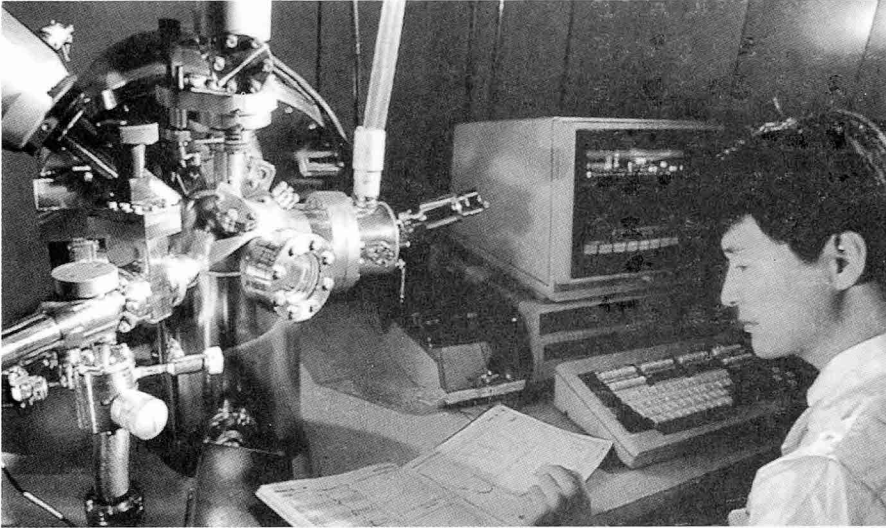
제4차 개정은 법령명칭을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면서, 방위산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 율곡기본계획과 중복됨에 따라 대통령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시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은 방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미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추가로 방산물자 지정 신청시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를 생략하는 등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행정절차를 단순화하였다.

한편, 군용총포, 화약류에 부가하여 도검류까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및 생산을 허가하도록 추가시키고, 시제 또는 연구 중인 장비도 장차 군사용으로 조변할 필요성이 있는 물자인 경우에는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87. 11. 28일 시행된 제5차 개정에서는 '83년부터 잠정적으로 운영해오던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전문·계열화제도의 법적근거를



◀ 제4차 개정은 군용총포, 화약류에 부가하여 도검류까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및 생산을 허가하도록 추가시키고, 시제 또는 연구 중인 장비도 장차 군사용으로 조변할 필요성이 있는 물자인 경우에는 방산물자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사진은 다연장 로켓 발사장면)



◀ 제5차 개정에서는 '83년부터 잠정적으로 운영해오던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전문·계열화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산물자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 방위산업 기본계획 수립시 국산화 촉진 사항을 추가시키면서 방위산업육성기금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마련하였으며, 방산물자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 방위산업 기본계획 수립시 국산화 촉진 사항을 추가시키면서 방위산업육성기금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동쟁의 금지 및 제한대상을 “주요방산업체” 종사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주요방산업체 지정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군사절충교역에 대한 법적근거 설정과 연구기관 위촉대상에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기관의 포함 및 계약 위반에 따른 벌칙사항도 신설하였다.

특히, 방산물자 지정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 군수품까지 지정 가능하던 것을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로 그 범위를 특정하였다.

제6차 개정은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89. 12. 30일에, 제7차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명 등 관련조항을 '93. 3. 6일에 개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시행된 제8차 방산특조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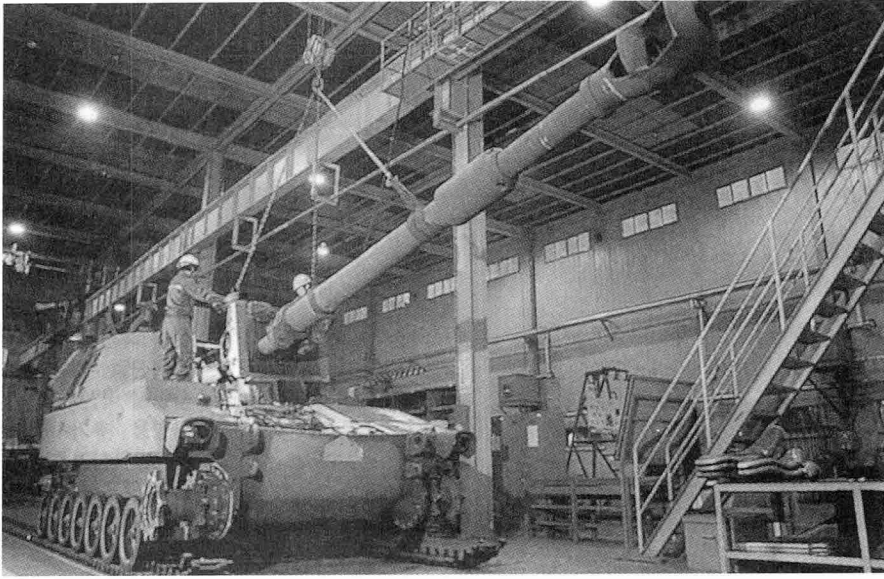
- 방산업체 지정시 주요방산업체 이외의 방산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구분 지정하도록 하였고,

-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 방산물자 원가계산 기준 등 관련규정은 방산심의회 심의사항에서 국방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국방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으로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절차를 신설하였으며,
- 방산업체가 임의로 휴·폐업할 경우 방산물자의 적기 공급차질로 軍전력 증강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사전 승인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주요 개정내용

• 방산업체 구분지정

방산업체를 구분 지정하게 된 배경은 '80년대 중반 방산업체 종사근로자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핵심방산물자 생산공급이 중단되는 등 군사력 건설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현재 지정된 80여개 방산업체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재분류해야 하고, 향후 신규 방산업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단계에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운용될 것이다. (사진은 M109A2 자주포 제조과정)

따라서 제9차 헌법개정시 헌법 제33조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며,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 쟁의행위의 금지조항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방산특조법 제5차 개정시 반영하였으며, 방산특조법 제18조 노동쟁의 조항에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 행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 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방산특조법 제4조 방산업체 지정조항에 “총포·유도무기·항공기·함정·탄약·전차·레이다·광학장비·전투공병장비·화생방장비 등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를 주요방산업체로 지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87. 11. 28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방산업체 80여개 중 60여개 업체가 주요방산업체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상기 방산물자 이외의 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경우에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 지정된 주요방산업체와 혼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에서는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명확히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명료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적용범위를 분명하게 하였다.

따라서, 현재 지정된 80여개 방산업체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재분류해야 하고, 향후 신규 방산업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단계에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운용될 것이다.

또한, 본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해 12

방산심의회 운영 실적

(단위: 횟수)

계	'74~'85	'86	'87	'88	'89	'90	'91	'92
180	151	7	8	6	2	2	2	2

방산심의회 위원 개정

구 분	현 행(법률)	개 정 안(시행령)
위원장	국 무 총 리	국 방 부 차 관
위 원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방부, 상공자원부, 노동부, 과학기술처의 장관(6개부처의 장관)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부처(과동)의 관계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방위산업진흥회의 임원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기타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월말 국방부와 상공자원부 공동훈령으로 작성된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무기체계상 주요전략 및 전술장비의 완제품과 이에 적용되는 주요 구성품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방산심의회 하향조정

종전의 방산특조법 제5조에 방산심의회 심의대상은 방위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주요방산물자 및 업체의 지정과 취소, 방산물자 원가계산 기준 및 착수금, 중도금 지급 관련규정 심의 등으로 되어 있었다.

동 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방부, 상공자원부, 노동부, 과기처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및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9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왔다.

'74년 이후 '92년까지 동 심의회 심의 횟수는 P2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80건이었으며 그중 '74~'85년 기간이 151건으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및 취소가 133회로 가장 많고, 원가계산기준 및 착·중도금 지급사항 14회, 방위산업의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등 기타사항 33회로 되어있는데,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심의방법도 '70년대 방산 초기에는 본 심의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나, '80년대부터는 단순한 안건으로서 대부분 서면의결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심의회 안건은 대부분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서면의결함에 따라 위원 서명 소요기간이 통상 3개월이상 장기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방산심의회 운영을 국방부장관이 실무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동 심의회 구성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상기정부관련 6개부처의 관계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자와 방산업체를 대표하는 방위산업진흥회의 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그리고 기타 방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산실무위원회 제도는 폐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심의내용도 방위산업 육성발전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 주요방산업체의 지정 및 취소, 주요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는 심의회 심의대상

이었으나, 금번 개정시에서는 주요방산업체의 신규지정, 취소 및 폐업승인의 경우로만 제한하였다.

최근들어 총포, 탄약, 화생방 물자 등 재래식 무기는 수요가 대부분 충당되어 향후 수요가 감소되어짐에 따라 전시를 대비한 공장 유희설비유지대책의 일환으로 방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필요성이 대두되어 보조금 지원계획을 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다.

특히, 본 심의회 심의사항으로 되어있는 방위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 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방위산업과 관련 민수산업 정책과 상호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방산업체 생산설비에 대한 民·軍·共用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법 제12조에 명시된 계약 특례 조항에 따라 계약체결시 원가계산기준, 착수금·중

도금 지급기준 및 절차사항을 방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실무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회계법 운영 주무부서인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방산물자 계약의 특례 및 종류·내용·범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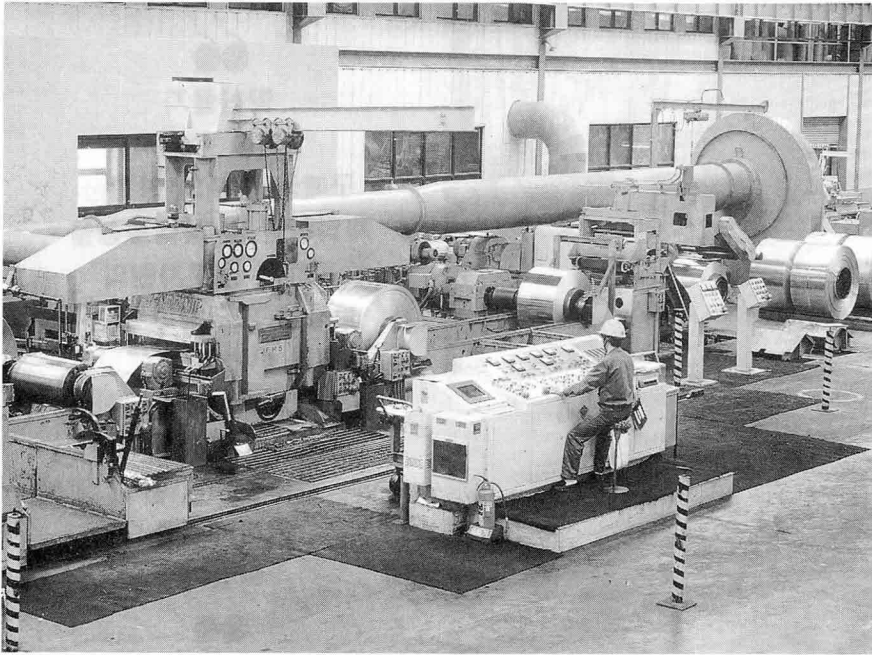
방산특조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회계법의 특례로 설치한 장기계약과 개산계약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적용시 해석이 상이한 이론들이 제기되어, 장기계약과 단기계약,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방산계약제도의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였다.

또한 일반확정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이행기간 중에 가격변동 또는 원가절감 등이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제약조건을 삭제하였고, 단가고정계약의 경우에도 과거실적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계약체결 유인 대책이 미흡하므로 실적단가에 생산자 물가기본분류별지수의 등락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 계약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물가조정단가계약으로 보완하였다.

유인부확정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시 예정가격은 결정할 수 있지만 계약의 성질상 유인이익에 의해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는 지급가능한 최고한도의 계약금액과 목표원가 그리고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후 실제 발생원가와 목표이익 그리고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특정비목확정계약 체결시에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 주요방산업체의 지정 및 취소, 주요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는 심의회 심의대상이었으나, 금번 개정시에서는 주요방산업체의 신규 지정, 취소 및 폐업 승인의 경우로만 제한하였다

곤란할 때 적용함으로써, 일반개산계약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목이 아니라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로 명확하게 구분명시하였다.

그리고 개산계약의 경우, 업체의 적극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부원가정산 계약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을 미리 결정할 수는 없으나 유인이익에 의하여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는 목표원가 및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후 실제 발생 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방산물자 원가계산과 관련된 계약제도는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대별되어지는데, 확정계약에는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및 유인부확정계약이 있으며, 개산계약에는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 그리고 일반개산계약으로 구분되어진다.

또한 확정계약을 더욱더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회계법시행령 관련계약금액 조정 규정도 새로이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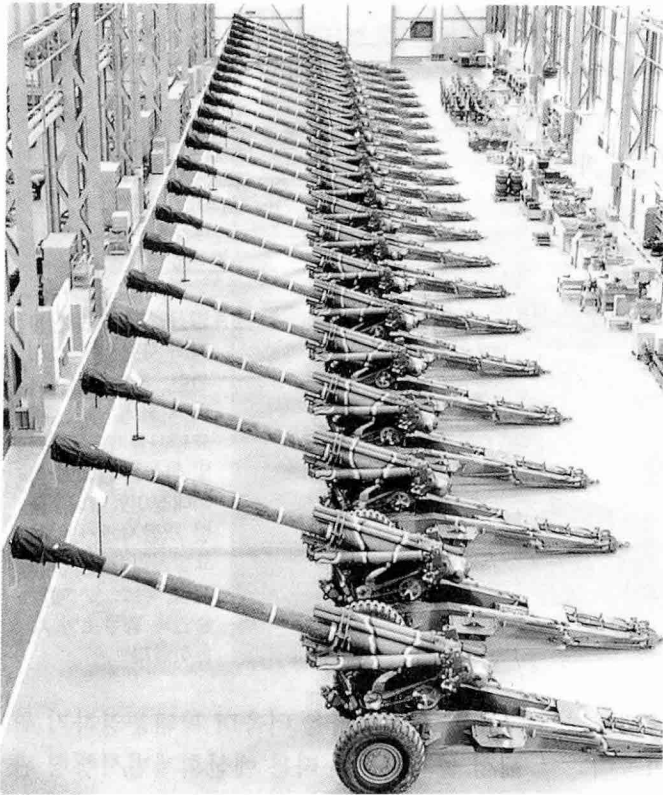
• 국방 과학 기술 정보 관리

지난 '92년초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정보센타를 설립한 후 국방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과 民·軍 기술교류차원의 활성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법 제21조의3에 효율적인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해야 할 대상 기술로서는 주요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 절충 교역에 의해 해외업체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기술, 그리고 기타 정부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국방과학기술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범주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제품규격서,



◀ KH 179 155mm 곡사포

“
방산물자
·기술 수출시
구매국 정부의 원활한
계약이행 및 품질보증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출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설계도면, 품질보증자료 등 기술자료 묶음 및 기타 각종 기술정보자료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상기 국방과학기술정보 중 군사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기술정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진흥법에 명시된 과학기술정보 유통계획에 따라 民·軍 간에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평가 및 목록화, 도입 및 보유기술의 체계화, 선진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련 자료 발간·배포 기능 등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정보센터는 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유통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보유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게 되어있어 실

질적인 유통이 곤란하여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및 민수분야 기술 이전시 유·무상 대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및 민수분야 이전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절차와 기술사용료 징수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기타 개정 사항

* 품질보증 체제개선

먼저 시행령 제36조 품질관리 및 지도와 관련, 현대의 품질보증 개념인 DMS품질 규격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 현장에서 검사, 검사기법 등의 품질관리 수단 뿐만 아니라 원자재, 작업인력, 생산시설 및 제조공정 등 가용자원의 적정 배분을 위한 기획, 영업, 구매, 제조, 검사, A/S 등 제반 경영방침 및 활동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경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최적의 품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관리, 문서관리, 제조관리, 구매관리, 검사, 시험 및 시험장비, 규격 불일치 물자관리, 취급·저장 및 인도, 품질기록 등 품질경영에 필요한 품질보증 체계 등 각종 적용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동 3,4항에 규정된 검사원의 구분, 자격기준, 자격종목, 그리고 자격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상기 품질경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조직, 검사·시험 및 시험장비 등 포괄적인 품질보증체계 확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 사전생산시 선품질확인활동**

방산물자의 연중 계획적인 생산과 철저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계약지체에 따른 납기연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 통보된 생산계획 물량을 계약이전에 먼저 생산하고자 할 경우, 방산업체가 당해년도 물량에 대한 품질확인활동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방산물자 생산기간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방산업체 휴업·폐업**

방산업체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할 경우 방산물자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휴·폐업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휴업·폐업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여 방산물자 적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법 제21조의 4를 신설하였다.

물론 이때 주요 방산업체의 폐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산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대학내 특화 연구기관 지정**

대학의 우수자원을 국방과학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국방과학기술의 기반확립을 위해 군사 비밀이 아닌 특정분야 연구사업을 국내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 연구기관 위촉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특화 연구기관을 위촉할 경우에는 방산업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연구기관으로 위촉시 적용되어온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보안요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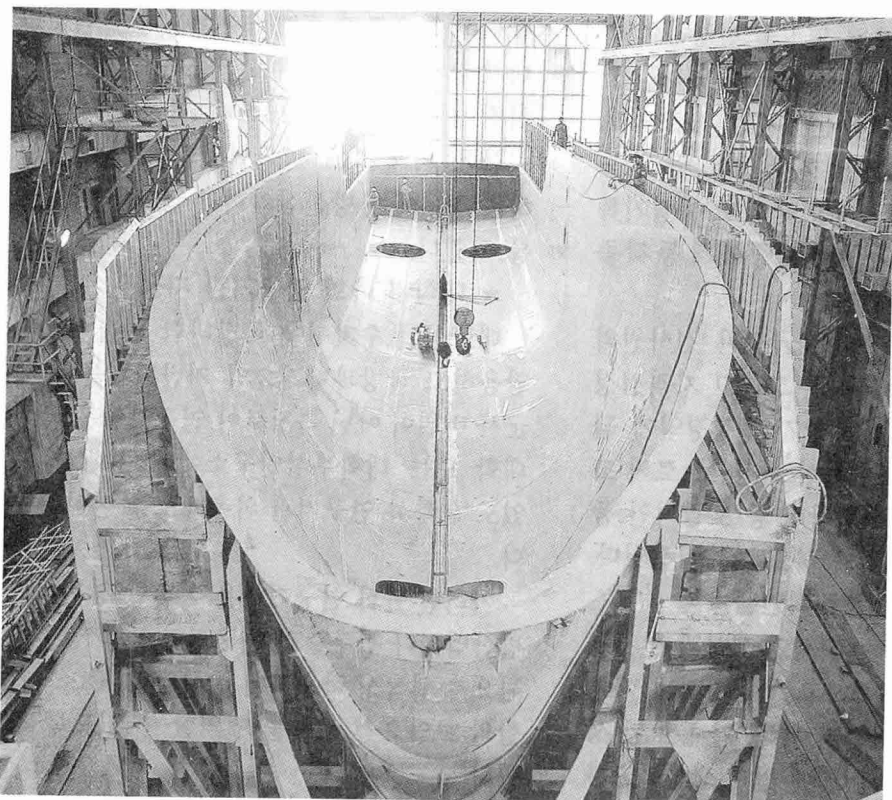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의 우수한 두뇌자원 활용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기반구축을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청문절차 신설**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취소, 방산육성기금의 용자금 회수 또는 연구기관 위촉을 해지할 때 사전에 청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당해 업체 및 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생산기간 변경 내용

집행계획	X-1(12)	X(1)	X(7-8)	X(12)	비	고
현행	↑ (전정위 조변지시)	↑ (예산배정)	↑ (계약) ↓ (생산)	↑ (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전까지 업체의 생산설비 및 인력의 유효화 • 후반기에 생산량 집중으로 품질보증물량 과다 	
집행계획	X-1(12)	X(1)	X(7-8)	X(12)		
변경	↑ (전정위 조변지시)	↑ (예산배정) ↓ (생산)	↑ (계약)	↑ (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간 충족으로 생산설비 및 인력의 연중 균등가동 가능 	
변경	X-1(12)	X(1)	X(7-8)	X(12)		



◀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심의회 운영을 하향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 생산설비 합리화 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질적 선진화와 민수산업과의 연계체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도록 시행령 제41조의 3을 신설하였다.

청문절차는 국방부장관 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청문서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송부하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직접 출석하거나 청문일까지 답변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대한 보장하게 되었다.

*** 방산물자·기술 수출시 정부보증**

방산물자·기술 수출시 구매국 정부의 원활한 계약이행 및 품질보증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방산물자·기술 수출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방산육성기금 용자범위 확대**

軍소요 격감으로 인한 생산설비의 유희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전시를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생산설비의 유지비용

을 방산육성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시대비 필수생산설비 유지로 유사시 방산물자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개정 의의

금번 방산특조법 및 시행령 개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난 20년동안 국무총리주관으로 운영해오던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부장관이 운영하게 하여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권화와 자율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방위산업의 질적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전문·계열화 재정비와 병행하여 민수산업과 방위산업의 연계 추진을 위한 보완책으로

방위산업 생산설비 합리화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방위산업과 민수산업간에 실질적인 산업 연계체제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방산물자의 확정계약 및 개산계약의 개념 및 적용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보다 명료화시켰고, 계약기간 중 비용 변동, 과거 실적단가에 생산자 물가지수 반영 등 계약조건을 현실화시켰으며, 특히 개산계약의 경우에도 업체의 적극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부원가정산계약제도를 신설하였다.

넷째. 民·軍간에 국방과학기술정보를 상호 유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범 국가적인 기술활용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상호기술 이전에 따른 세부절차와 기술사용료 징수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섯째. 품질보증체계를 보면 단순 검사위주에서 탈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 영업, 구매, 제조, 검사, A/S 등 전반적인 품질경영 차원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여섯째. 연중 후반기에 생산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산업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 생산물량의 사전 품질확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납기 지연을 사전 예방하고, 방산업체는 계획생산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지난 10여년간 산발적으로 대학이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이를 보다 집중화하여 몇개의 대학에 특정 연구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시킬 수 있도록 특화 대학 연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 국방과학기술 기반확립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

져올 것으로 본다.

여덟째. 방산업체·물리지정의 취소, 방산육성기금 용자금의 회수, 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등 당해 업체 및 기관의 경영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업체 및 기관에 끼치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맺 는 말

금번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심의회 운영을 하향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 생산설비 합리화 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질적 선진화와 민수산업과의 연계체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산물자 계약제도 및 적용범주의 구체화,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제도 신설, 품질보증체제 선진화, 대학 기초연구 활성화, 계약전 정부 품질확인제도 등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도록 전향적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본 개정을 통하여 방위산업관련 업무의 분권화, 자율화,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각종 관련제도의 적용상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방위산업 신경영 전략에 적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정책의 변화는 곧 제도와 규정의 발전으로 연결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때, 본 개정을 통하여 국내개발을 통한 방위산업 촉진이 이루어져 주변 4각의 치열한 기술개발과 선진기술 이전 차단 등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방산업체·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